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# 연수구보

■ 구정 방향 ■

함께 가꿔요!
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07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|   |         |
|---|---------|
| 선 | 기 관 의 장 |
| 람 |         |

부록 제706호 2012. 8. 20.(월)

## 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64호(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) ..... 1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65호(도로명주소 고시) ..... 3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66호(도로명주소 고시) ..... 4

|   |  |  |  |  |  |  |  |
|-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|  |  |  |  |  |  |  |
| 람 |  |  |  |  |  |  |  |

『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』

## 사업시행인가 고시

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-1번지 일대 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8. 20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### □ 사업시행인가 내용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  - 위 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-1 외 1필지
  - 구역면적 : 6,809m<sup>2</sup>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성명 : 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영린
  -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-8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2년 8월 16일

6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율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| 구역명         | 대지면적(㎡) | 건축면적(㎡)  | 건축연면적(㎡)  | 건폐율(%)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
| 송학동지<br>아파트 | 6,809   | 1,449.36 | 23,125.14 | 21.29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용적율(%)  | 높이(m)    | 층수        | 용도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240.16  | 59       | -2/20     | 공동주택<br>(아파트) |    |

7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| 유 형 별   | 세대수 | 전용면적<br>(㎡) | 주거공용면적<br>(㎡) | 공급면적<br>(㎡) | 비고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59.25A형 | 107 | 59.25       | 18.0958       | 77.3458     | 분양 |
| 59.25B형 | 99  | 59.25       | 18.6201       | 77.8701     | 분양 |
| 합계      | 206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
8.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9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해당없음

10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 (연수구청 건축과에 비치)

##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08. 20.

###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#### 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9

| 종전주소                      | 도로명주소                  | 도로명주소<br>부여사유 | 도 로 명<br>고 시 일 | 도 로 명<br>부 여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천광역시<br>연수구 옥련동<br>산2-12 | 인천광역시<br>연수구<br>비류대로 9 | 미부여           | 2009-07-10     | 고구려의 시조<br>고주몽의 아들인<br>비류가 남하해서<br>세운 나라에서 유래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~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08. 2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## 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08. 20.

###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99번길 35

| 종전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로명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로명주소<br>변경사유 | 도로명<br>고시일     | 도로명<br>부 여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변경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천광역시<br>연수구<br>옥련로99번길<br>35 | 관련지번<br>변경    | 2009-07-0<br>9 | 옥련로의<br>시작지점에서부터<br>약990m지점에서<br>왼쪽으로 분기되는<br>도로 |
| 인천광역시<br>연수구<br>옥련동<br>254-18,<br>254-17 | 인천광역시<br>연수구<br>옥련동<br>254-18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~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02. 0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# 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